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3-07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7누69443 취득세부과처분취소
원고, 피항소인	A
피고, 항소인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[redacted]지방법원 2017. 8. 8. 선고 2017구합54 판결
변 론 종 결	2017. 12. 19.
판 결 선 고	2018. 1. 16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15. 9. 21. 원고에게 한 취득세 6,464,810원, 지방교육세 369,410원, 농어촌특별세 529,8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3-07

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서 7쪽 3행 '없다'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.

[피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은 취득의 시기를 날(日)로 정하고 있고 시, 분, 초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날만이 기준이 되는 것이지 그 날의 시간대별 순차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한다. 그러나 위 시행령 조항은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한 규정일 뿐, 이 사건과 같이 원고의 조합원 승계절차가 마쳐진 시점과 피고의 준공인가 결재가 마쳐진 시점 및 그 선후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.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]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3-07

재판장 판사 여상훈

판사 견종철

판사 장철익